

노부모부양 특별공급 |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 서류	발급 기준	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 서류	○		신분증	본인	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 (※2018.12.11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제출)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당해 지역 우선 공급 신청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(거주기간 없을 경우 해당 없음) -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
	○		특별공급신청서, 주택서약서		접수 장소에 비치(인터넷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)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 또는 본인사실서명확인서	본인	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(본인 발급)
		○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- 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
노부모 부양 특별공급	○	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존속	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(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)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피부양 직계존속	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 등 배우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
		○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비속	주민등록표등본상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: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의 주소변동사항(1년 이상), 세대주와의 관계 등
		○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 / 피부양 직계비속	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만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	○	출입국사실증명원	세대원	가점제로서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-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
대리인	○		인감증명서	청약자	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, 단, 외국인인 경우 분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, 본인발급
	○		인감도장	청약자	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
	○		위임장	청약자	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접수 장소에 비치
	○		주민등록증 및 인장	대리인	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

※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0.05.22)이후 발행 및 상세 발급분에 한합니다.